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폐지〉

■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67, 2201069, 2201081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II. 검토의견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폐지	4
※ 참고자료	21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7.
- 3) 회부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7.
- 3) 회부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7.
- 3) 회부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II. 검토의견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폐지

□ 3건의 개정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활수준을</u>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 ----- ----- <u>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u> ----- ----- <u>가구원의 범위</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 3. (생 략) ②·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 략)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u>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가구원은</u>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

가
구원에-----

가
원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

④ -----

-----가구원이-----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가-----
-----구원이-----

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
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
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
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
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
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
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
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

-----.

② -----
-----가구원의-----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양로지원) -----

-----부양의무자

<u>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u>	<u>(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u> -----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략)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및 그가</u> <u>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u> -----. <u>이 경우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② -----

-----가구원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

-----가구원에-----

-----가구원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구원이-----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가구
-----원이-----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guidelines arranged vertically. Each set is composed of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structured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illegible]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양로지원) -----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 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 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 성 중 <u>부양의무자가 없는 자</u>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 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 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 ---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가 없는 ----- ----- -----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활수준을</u> 고려하여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 ----- ----- <u>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u> <u>을</u> ----- -----, <u>가구원의 범위</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 략)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15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15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구원-----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질문 등) ① -----

-----가구원에-----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

-----가구원의-----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가구원이-----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가구원
의-----

[illegible]

② -----
-----가구의원-----

③ ~ ⑦ (현행과 같음)

□ 3건의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그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인바, 이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였음.

□ 현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¹⁾

○ 그 결과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소를 달리하여 실제

1) 「국가유공자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자법」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유공자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호)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 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한편, 보훈관계법령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과 생계지원금(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을 정하고 있는데, 생계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 확인·심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경우, 생계지원금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폐지되는 효과가 있음.²⁾³⁾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4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4항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고시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8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게 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대상 인원 및 금액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정안)	합 계
추가 대상 인원	3,580명	10,140명	816명	14,536명
소요 예산	약 96억 원	약 266억 원	약 29억 원	약 391억 원
비 고	중상이자 등	6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	

※ 국가보훈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하여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인 경우(2023년) 및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2024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음.⁴⁾

자료: 국가보훈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⁵⁾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 강화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⁶⁾

□ 또한, 개정안은 ‘가구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생활수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⁷⁾

4)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호) 제3조(부양능력 등)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3. 65세 이상 노인

5)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동 기준을 폐지하였음.

6)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검토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의안번호 제2023-875호).

- 다만,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문언만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가구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추가되는 대상 인원은 14,536명이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약 39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인 경우는 2023년에,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2024년에, 각각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예산 소요는 약 2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구 분		지급액(천원)	추가인원(명)	예산(천원)
3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242	88	255,552
	중위소득 40% 이하	277	100	332,400
	중위소득 32% 이하	311	597	2,228,004
4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300	7	25,200
	중위소득 40% 이하	336	8	32,256
	중위소득 32% 이하	370	16	71,040
계			816	2,944,452

자료: 국가보훈부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조사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3건의 개정안 중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안」의 경우 법 제14조제2항을 개정하면서 “부양의무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제54조의2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거소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구원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건, 정부 제출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112

8)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건(2024. 6. 27. 회부)
 -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0061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0062호),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0063호)
 정부 제출 개정안 3건(2024. 7. 1. 회부)
 -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151호),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153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184호)

참고1

생활조정수당 개요

□ 개요

- (사업내용)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 (대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사망·부상·특별공로자

□ 지원내용

- (지급기준)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지급액) 24.2만원 ~ 37만원

가구원 수	소득수준	지급액
가족 3인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	31.1만원
	중위소득 33~40%	27.7만원
	중위소득 41~50%	24.2만원
가족 4인 이상	중위소득 32% 이하	37만원
	중위소득 33~40%	33.6만원
	중위소득 41~50%	30만원

□ 지원현황: 21,540명, 775억원 지원 ('24년 예산 기준)

참고2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의 50%	1,191,000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기준금액의 40%	952,800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준금액의 32%	762,240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기준금액 50%는 4,705,810원, 40%는 3,764,648원, 32%는 3,011,718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⑤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

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
5.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⑥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기피·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